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4. 12



서울특별시
재무국

목 차

I. 과세체계 개편 요약	1
II.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 사항	2
III. 지방소득세 개요	5
IV. 법인지방소득세	7
1. 통칙 ▶ 7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11	
3.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20	
4. 내국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23	
5.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25	
6.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30	
V. 개인지방소득세	33
※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조항 ▶ 37	
VI. 과세체계 개편 전·후 비교 요약	41
VII. 지방소득세 국세 가산세 비교 요약	42
VIII.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지방소득세)	43

※ 본 서의 내용 중 약어로 표시된 관계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명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시
지 방 세 기 본 법	지기법	지기령	지기칙	지방세기본법 제1조 ▶지기법 §1
지 방 세 법	지 법	지 령	지 칙	지방세법 제1조제1항 ▶지법 §1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지특령	지특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지특법 §1
국 세 기 본 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국세기본법 제1조 ▶국기법 §1
법 인 세 법	법 법	법 령	법 칙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법법 §1①
소 득 세 법	소 법	소 령	소 칙	소득세법 제1조제1항 ▶소법 §1①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조특법 §1

I 과세체계 개편 요약

- ☐ 종전 신고·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¹⁾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 되었습니다.
- ☐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공제·감면한 후
-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국세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²⁾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¹⁾ 2014.1.1. 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소득 발생분

²⁾ 지방소득세율 : 국세 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체계

- ☐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일부 세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개인지방소득세(舊 소득세분)은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 단,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을 확인하여 세액 산출
- ☐ 개인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지특법 §93~§176)]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2015.1.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법 §103조의29]

II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 사항

1 시행시기

-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시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지법 부칙 82)
-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3.6.1. ~ 2014.5.31.인 경우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 '14년 이전 사업연도분의 경정·결정 및 수정신고는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2 과세표준과 세율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3 세액 공제·감면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을 반영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 산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과세표준 이후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

*단,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 조특법 §72①의 법인세 세율의 10% (지특법 §167)

4 수정신고 등 신고기한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 법인세 신고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단,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은 종전과 동일 : 법인세 신고 + 1개월 (지령 §100조의27)

5 신고 특례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구 지방세법 §91⑤)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해당 조항 삭제)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 사업연도 소득 확정신고시 가감 가능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시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해야 함

6 제출 서류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 및 명세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③ 재무상태표,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⑥ 세무조정계산서 ⑦ 법인세법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7 가산세

- ☐ 지방세 관계법 확인 후 계산 (p.42 참고)

8 전자신고·납부

- ☐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통하여 신고·납부

- ☐ 신고·납부 방법

구분	신고·납부 방법
단건 납부	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납부
일괄납부 엑셀 이용	납세지가 두 곳 이상인 경우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납부
일괄납부 회계프로그램 이용	사내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전자신고·납부 > 특별징수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선택

- ☐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업로드로 신고 가능한 법인구분(법인코드)
- 일반법인(01), 연결법인(02),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03),
 -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04), 외국법인 증여소득(05), 외국법인 인적용역(06),
 -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14)
- ※ 청산소득(준청산소득) 법인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방문신고
- ※ 이택스의 경우 '15년 3월까지 시스템 개발 완료 예정

《 화면 예시 》

[이용안내](#)
[지방세정보](#)
[자료실](#)
[열린마당](#)
[인터넷신고·납부](#)
[MY Wetax](#)

통합검색

[홈](#)
[회원가입](#)
[사이트맵](#)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회원가입](#) [가입확인/재등록](#)
[로그인](#)
전자신고·납부시간 07:00~22:00 365 이용가능

TAX PAYMENT

인터넷신고·납부

▶ 전자신고·납부

- 취득세(부동산)
- 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부
양도소득세부
법인세부

▶ 주민세

▶ 지역자천사업세

▶ 세자세

▶ 수정신고

▶ 전자조회

▶ 전자신청

▶ 비회원 납부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인터넷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를 선택하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 외 법인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법인세(사업계시일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간편신고

법인세(사업계시일 2013년 12월 31일 이전) 역산신고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법인의 경우 상단의 기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화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신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일반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
※ 서류시 신고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 당해 사업연도 기준으로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발도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서류시 신고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파일첨부 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위택스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2014년 이후 개시한 일반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회계프로그램으로 신고서 작성 1. 변환프로그램 실행 후 오류검증 2. 신고서 전송

 ※ 서류시 신고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Quick Menu

조회납부

발급원서확인

지방세종정서 발급

지방세 납기 연내

세액미리정산

지방세사액금액

1:1 고객센터

문의

4

III 지방소득세 개요

1 정 의 (지법885)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
법인지방소득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

☐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2015년 개정안]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 법인 구분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 사업자와 사업장

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장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연결집단	연결법인 전체
연결모법인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② 개 요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이 지역세수와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0년 舊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하고

- 2014년에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표준에 각각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 개인은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를 차감하되, 법인은 별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지 않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구분	개인	법인	비고
~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세목 조정 세목 조정, 과세체계 개편
~ 2013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2014년 ~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개편된 과세체계에 의한 지방소득세는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는 개편된 과세체계로 산출한 세액을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함께 신고하도록 유예규정을 두어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IV 법인지방소득세

1 통 칙

1 납세의무자 [지법 §86]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내국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
외국	영리법인	국내	소득	과세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		×	×

외국의 정부, 지자체 :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취급

국제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법 §34]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 ☐ 특별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지법 §87]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지방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름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양도소득

구 분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국내 소재 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해산으로 인한 소멸시
세 율	1~2.2% 누진세율	1%(미등기 4%)	1~2.2% 누진세율
신고·납부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4 사업연도 [지법 §88]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 <1순위> 법령·정관상 1회계기간(1년 초과 못함)
 - <2순위> 설립신고(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한 기간
 - <3순위> 1,2가 없는 경우 1.1~12.31

☐ 의제 사업연도

구분		의제 사업연도	
해산	합병·분할· 분할합병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합병(분할) 등기일	12.31
	위 외 해산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해산(파산) 등기일	12.31
청산	청산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12.31
	사업 계속시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사업계속 등기일	12.31
연결납세방식 적용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연결납세사업연도 개시일 전일	12.31
상법 등 조직변경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기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의제규정 적용 안함 ☞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미발생으로 신고시 : ~ 신고일까지 1사업연도로 봄	12.31
	설립무효 설립취소 판결	1.1 ----- 1사업연도 ----- ----- 2사업연도 ----- 12.31 ▲확정 판결일	12.31

5 납세지 [지법 §89]

-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안분)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 **[안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납부함.

《 안분율 》

$$\text{산출세액} \times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소수점 6자리까지 산정 권장

《 안분 방법 》

×	산출세액	
	안분율	
	사업장별 산출세액	○ 전체사업장 공통 공제·감면일 경우 안분하여 차감. ○ 특정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공제·감면일 경우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	세액공제·감면	※ '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결정세액	
+	가산세	○ 법 가산세(무기장 등)는 안분하여 가산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실제 납부 또는 수사부과된 자치단체의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특별징수 납세지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특별징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 청구)
	납부할세액	
±	경정·수정신고·가감액	○ 舊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및 동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개정 후 지방세법에서는 10% 미만 가감 신고 특례가 폐지되어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사업장별 납부 세액	

〔 참고 〕

- 종업원수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단,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 사업장이란 :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인적설비 -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물적설비 - 허가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

⑥ 비과세 [지법 890]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19] **법인세 규정 준용**

-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세율 [지법 §103조의20]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법상 계산법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법	
	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과세표준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과세표준 ×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과세표준 × 2.2%	4,200만원

3 세액 계산 [지법 §103조의21]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¹⁾ + 가산세²⁾ - 기납부세액³⁾

- ¹⁾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²⁾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p.42 참고)
³⁾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frac{12}{\text{사업연도 월수}}$) × 세율 × $\frac{\text{사업연도 월수}}{12}$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4 세액공제 · 감면 [지법 §103조의2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며, 현재 아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

지특법 §16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0.9% 세율 적용

5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지법 §103조의23]

- ☐ 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함

- ☐ 제출서류 및 납부서식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43호 43호의7
첨부1	③ 재무상태표,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⑥ 세액조정계산서*	43호의2
첨부2	⑦ 법인세법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⑦-1 세액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급신청서 ⑦-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⑦-3 표시통화재무제표 ·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⑦-4 원화재무제표 ·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원화외의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 작성하여야 할 재표제표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⑦-5 합병(분할)시 부속서류 등 · 합병(분할)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승계한 자산 및 부채 명세서 · 합병법인 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 등의 명칭, 합병(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43호의3 43호의4 43호의5 43호의6 43호의9
납부서	⑧ 납부서 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 수기 납부서 납부 불가)	14호 43호의8

【 Check 】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연장이 인정되지 않음(단, 외국법인은 인정)
-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시 국세는 무신고로 보나, 지방세 규정 없음 (향후 개정 검토 중)

⑥ 수정신고 [지법 §103조의24]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 Check 】

- ▶ 세무서로부터 경정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 舊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1① 단서에서 규정한 10% 미달 가감신고 특례 폐지 : 세액 크기에 상관없이 발생시마다 신고·납부
- ▶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이 가능하며,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은 없음. 단, 부과지할 경우 가산세 적용
- ▶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세액은 다음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음(단, 환급가산금 미적용)

⑦ 결손금 소급 공제 [지법 §103조의28]

-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신청 가능
- ☐ 조건
- 중소기업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 ①직전 사업연도 및 ②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
 -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지칙 제43호의9 서식]
- ☐ 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text{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 \left(\text{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text{소급공제 결손금액} \right) \times \text{직전 사업연도 세율}$$

【 Check 】

- ▶ '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및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은 부가세 방식으로 계산
- ▶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 서식〕작성방법 참고

⑧ 특별징수 [지법 §103조의29]

- ☐ 특별징수란?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금을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
-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적용한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계산서와 명세서¹⁾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²⁾
[¹⁾지침 제42호의2서식, ²⁾제42호 서식]

☐ 특별징수 대상과 세율 [지법 §103조의29, 법법 §73, 소법 §127①1,2, 소법 §16,17]

대상 소득		원천징수 세율	특별징수 세율
1.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14%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5%
2. 배당소득금액	투자신탁의 이익	14%	1.4%

☐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법 §53조의5]

$$\begin{aligned} & \text{(지방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 & \text{미납세액} \times 5\%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3/10,000 \times \text{경과일수}) \leq 10\% \\ & \text{(국 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 & \text{미납세액} \times 3\%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3/10,000 \times \text{경과일수}) \leq 10\% \end{aligned}$$

□ 납세지 [지법 889]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만, 그 법인의 지점 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그 사업장 소재지

○ 단, 위의 납세지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2015년 납세지 관련 개정안]

제89조(납세지 등) ③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그 소득의 지급지**

[참 고]

- 독립채산제 :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함.
- 지급지 판단 :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에 대한 판단은 이자소득의 발생 및 지급과정 등 제반 업무를 고려할 때, 예치대상자 선정, 예치한 금액의 관리, 이자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 이자소득 지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곳을 사실상 소득의 지급지로 판단됨 [지방세운영과-614, 20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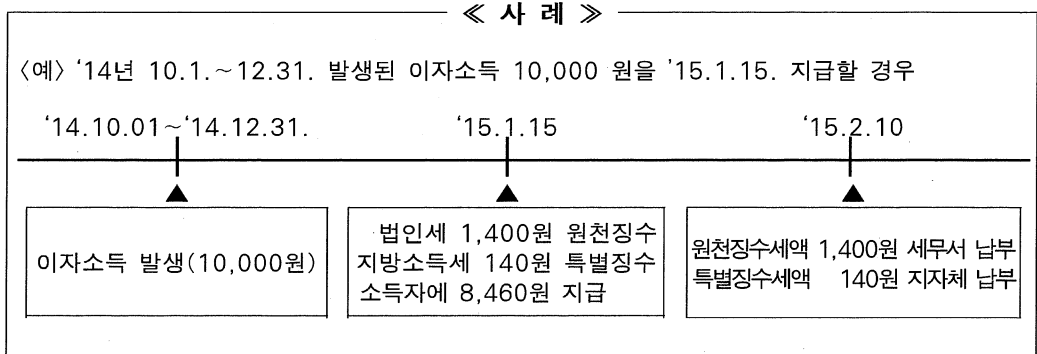
□ 시행시기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함 [지법 부칙 제12153호 §1]

-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25)% 원천징수
- '15. 1월부터 : 법인세 14(25)% 원천징수 + 법인지방소득세 1.4(2.5)% 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지법 834)



-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로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처리방법
-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
[별지43호의5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과 유사)

[2015년 특별징수 개정안]

- ◆ 내국법인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 개선안 ('14.11.18. 입법예고)
 - (징수내역 첨부서 제출 변경) 특별징수의무자 납세 편의를 위해 제출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 첨부서 제출방법을 변경(영 제100조의 19 개정안)
 - 또한, 국세와 동일하게 지자체에 제출한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 발급 가능하게 함

구 분	현 행	개 정(안)
서 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 납세의무자, 징수세액 등	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 국세 명세서에 납세지 정보 추가
제출시기	매월	연 1회(다음해 3월)
제출방법	납세지 관할 지자체 (납부와 연계한 통신망 제출 가능)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통신망 제출 가능)
기타	납세의무자 징수내역 요구시 특별징수 의무자 자료제공 불편	제출한 명세서를 영수증으로 발급 가능

9 전자 신고·납부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참고 (p.3)

10 가산세

□ 기본법 가산세 [지기법 §53조의2 ~ 54조]

구분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비고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100	20(10)/100	
		수입금액	별도규정 없음	7(3.5)/10,000	
	(부당)	산출세액	40(20)/100	40(20)/100	
		수입금액	별도규정 없음	14(7)/10,000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10/100	국세는 과표안분 지방세 세액
	(부당)	산출세액	40/100	40/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별도규정 없음	14/10,000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별도규정 없음	10/100	
	부당	초과환급세액	별도규정 없음	40/100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별도규정 없음	40/100	
납부(환급)불성실	납부	(일수)미납세액	3/10,000	3/10,000	
	환급	(일수)초과환급세액	별도규정 없음	3/10,000	
가산세감면	기한후신고		1개월 내 50%	1개월 내 50% 6개월 내 20%	6개월내 감면 없음
	수정신고		6개월 내 50%, 1년 내 20%, 2년 내 10%		

□ 법 가산세 [지법 §103조의30]

구분		가산세액	세무서 제출기한
①	무기장	▶ MAX (산출세액×20%, 수입금액×7/100,000)	
②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분 주식등 액면가액 × 0.05%	설립등기일부터 2월내 (법법 §109)
③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 미수취·허위수취 금액 × 0.2%	
④	주식등 변동사항 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분 주식등 액면가액 × 0.2%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 (법법 §119)
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 × 0.02%	지급일 다음연도 2월말 (법법 §120)
⑥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 × 0.1% ▶ 미발급·가공발급·허위수수분 공급가액 × 0.2%	계산서합계표; 2.10 (법법 §121)
⑦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영수증 사실과 다르게 발급금액 × 0.2% ▶ 기부자별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 0.02%	

구 분		가산세액	세무서 제출기한
⑧	신용카드거래 거부	▶ 건별 MAX (거부·불분명 금액×0.5%, 500원)	
⑨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0.1% ▶ 건별 MAX (거부·불분명 금액×0.5%, 500원)	가입: 해당업종 3월내 (법법 §117의2)
⑩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 0.05%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국조법 §20의2)

【 Check 】

- ▶ 지방세는 무신고·과소신고 등 수입금액 기준 계산 규정 없음
- ▶ 지방세는 의무위반별 가산세 한도 규정 없음
- ▶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이 다름 : 국세는 과표안분, 지방소득세는 세액으로 계산
- ▶ 지방세는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없음
- ▶ 지방세는 무기장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비교하여 적용하는 규정 없음 단, 국세와 동일하게 개정 진행 중

(2015년 가산세 개정안)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 조특법 가산세

종류	요건	내용	지방소득세
①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조특법§90의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출자료를 기한 내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1천원	별도규정없음
②동업기업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100의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 소득금액의 4% · 과소신고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2%	국세 가산세의 10%
③동업기업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조특법§100의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Max(한도 : 미납세액의 10%) ①미납금액×0.03%×미납일수 ②미납세액의 5%	국세 가산세의 10%

1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31] **법인세 규정 준용**

☐ 내국법인이 법법 §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과세대상 및 세율 (국세의 10% 수준 지방소득세율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 주택 : 1%(미등시 4%)

○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 비사업용 토지 : 1%(미등시 4%)

*법법 §25①1호 중소기업의 경우 '14.12.31까지 적용 제외(개정안 '15년까지 적용제외) [지법 부칙 §5]

☐ 세액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 × 1%(미등기 4%)

*토지 등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 단,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차감

○ 둘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령 §92조의2⑨에 따라 산출

○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취득시기 : 법령 §92조의2⑥에 따름

☐ 안분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면적으로 안분

(p.9 안분을 및 안분방법 참고)

1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32]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함

○ 청산소득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 유사한 설립목적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 또는 국가 귀속

○ 이자소득 : 지방세법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로 종결*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 특별징수로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 등을 통해 이를 다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자산양도소득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준용하여 예정신고납부*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43호의10 서식])

※ 단,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회이상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 지방세법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지법 §103조의30①) 준용

3 |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지법 §103조의33]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 준용

2 | 신고·납부 의무

- 연결모법인

3 | 납세지

- 서울특별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
- 단,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4 |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34]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5 | 연결산출세액 [지법 §103조의35]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text{연결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1년으로 환산 (지법 §103조의21② 준용)

6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text{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개별귀속액}^{1)} \times \text{연결세율}^{2)}$$

¹⁾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²⁾연결세율 = 연결산출세액 / 과세표준

《사 례》

1. 과세 자료

〈법인세 과세자료〉					〈안분율〉*			
구 분	합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구분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각 사업연도 소득	-	80억	35억	△21억	서울	50%	30%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100억	90억	30억	△20억	부산	30%	-	-
연결방식 도입후 결손금	5억	-	5억	-	대구	20%	70%	100%
법인세 소득공제	15억	15억	-	-	합계	100%	100%	100%
법인세 세액공제	2.8억	1.85억	0.95억	-	*안분율 ; p.9 안분율 및 안분방법 참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억	2억	1억	-				

2.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계산 순서		모법인S	자법인A	자법인B	합계 및 계산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90억	30억	△20억	120억 = 90+30-20
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75억	25억	-	100억 × 9/12, 100억 × 3/12
③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60억	20억	-	80억 = (75-15)+(25-5)
④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80억			80억 = 60억 + 20억
⑤	연결 산출세액	1.58억			1.58억 = 80억 × 2% -200만
⑥	연결세율	1.975%			1.975 = 1.58억 / 80억
⑦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11,850만	3,950만	-	11,850만 = 60억 × 1.975% 3,950만 = 20억 × 1.975%
⑧	서울시 산출세액	5,925만	1,185만		5,925만 = 11,850 × 50% 1,185만 = 3,950 × 30%
⑨	서울시 신고세액	7,110만			7,110만 = 5,925 + 1,185

7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37]

-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8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44호 43호의7(을)
첨부1	각 연결법인의 ③ 재무상태표, ④ 포괄손익계산서, 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⑥ 연결집단 세액조정계산서*	44호의2
첨부2	⑦ 지법 §103조의23② 각 호의 서류 ⑦-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⑦-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⑦-3 표시통화재무제표 ·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⑦-4 원화재무제표 ·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원화외의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 작성하여야 할 재표제표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⑦-5 합병(분할)시 부속서류 등 · 합병(분할)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승계한 자산 및 부채 명세서 · 합병법인 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 등의 명칭, 합병(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44호의3 44호의4 44호의5
납부서	⑧ 납부서 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수기 납부서 납부 불가)	14호 43호의8

9 법 가산세 [지법 §103조의34]

○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지법 §103조의30) 준용

4 내국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41]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세율 [지법 §103조의42]

- 지방세법 제103조의 20 지방소득세율 적용 (1 ~ 2.2%)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text{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4 안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p.9 안분방법 참고)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

5 확정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43]

- 법법 §84조에 따른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 해당 신고기한까지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 해산한 경우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6 제출서류 및 납부 서식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 서식]
- 납부서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제43호의8 서식]

[2015 청산소득 중간신고 의무 개정 안]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중간신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중간신고의무 규정 추가

【 Chec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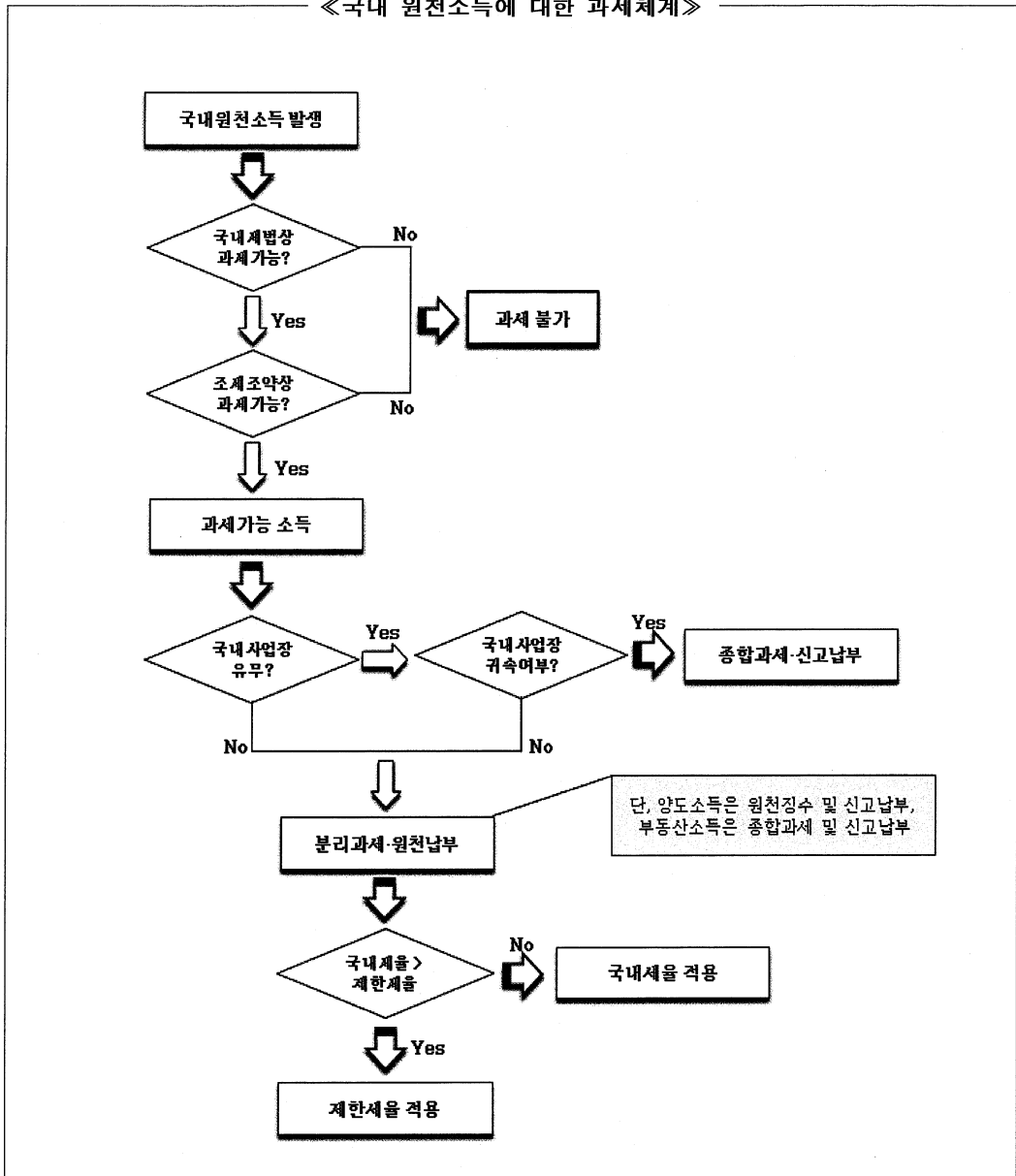
-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함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세와 동일함
- ▶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증가산금 미징수
- ▶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미과세 (지법\$103조의46)

5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 과세방법 법인세 규정 준용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②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47] **법인세 규정 준용**

-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법 §93조제3호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법 §91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상호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

*법법 §93조제3호에 따른 소득 :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단, 동법 7호 소득(양도소득)은 제외

-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 [법법 §91②]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 법법 §93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중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
- [법법 §91③]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 법법 §93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법법 §98조①, §98조의3, §98조의5, §98조의6

③ 세액 계산 및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지법 §103조의47⑤] **법인세 규정 준용**

-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법 §92부터 §94까지 준용

④ 세율 [지법 §103조의48]

- ☐ 법법 §93조제7호(양도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1% ~ 2.2% 세율을 적용.
- 지법 §103조의49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49]

- ☐ 내국법인 세액계산(지법 §103조의21)을 준용하여 계산
 -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법법 §92③ 준용하여 계산

6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50]

- ☐ 영리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법 §96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10분의1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7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51]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법 §93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법법 §97 준용

8 신고기한 연장 [지령 §100조의27] **법인세 규정 준용**

- ☐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봄
 - 기한연장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9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신고·납부의 특례 [지법§103조의51⑤] **법인세 규정 준용**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양도당시 특별(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관계 법령	(법법 §98조의2①, 지령 §100조의28제1호)
신고납부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 1개월)
서식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별지 제45호의2 서식)
납세지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할 법인세의 10%

※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준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주식·출자증권, 그 밖의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 조특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인 경우
- 또는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인 경우
- 단, 특별(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제외

관계 법령	[법법 §98조의2③, 지령 §100조의28제2호]
신고납부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 1개월)
서식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별지 제45호의3 서식]
납세지	해당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할 법인세의 10%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단, 특별(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제외

관계 법령	[법법 §98조의2④, 지령 §100조의28제3호]
신고납부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 + 1개월)
서식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별지 서식 제45호의 4서식]
납세지	해당자산의 소재지 (유가증권의 경우 발행 내국법인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할 법인세의 10%

10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납부 특례 [지법§103조의51⑥] 법인세 규정 준용

- ☐ 법법 §93조의6에 따른 영화·연극 배우, 직업운동가, 변호사 등 인적용역 소득이 특별징수되는 외국법인은
- 기 특별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 가능

관계 법령	[법법 §93조6, 지령 §100조의29]
신고납부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서식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 [별지 제45호의5 서식] (첨부)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소득-관련비용)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2.2%)

11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지법 §103조의52] **법인세 규정 준용**

-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법 §98부터 §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그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함.
 - 법법 §98조부터 §98조의6 준용

6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 규정 준용

- ☐ 조특법 §100조의15①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 용어

구 분	내 용
동업기업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동업자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배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동업자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지분가액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

2 납세의무자 [지법 §103조의53] 법인세 규정 준용

- ☐ 동업자
- 조특법 §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 동업기업 전환법인 [준정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조특법 §100조의16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짐

③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계 법령	(지령 §100조의30)
신고납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준청산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의6 서식) (첨부)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안분기준일	준청산일 현재의 안분율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2.2%)

④ **동업기업의 배분** [지법 §103조의54] **법인세 규정 준용**

- ☐ 아래 금액은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단, 아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함.

배분 기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
세액공제·감면	지특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금액
특별징수세액	지법 §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가산세	지법 §103조의30 및 지법 §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법 §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조특령 §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⑤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지법 §103조의55] **법인세 규정 준용**

-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여 조특법 §100조의21①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

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지법 §103조의56] **법인세 규정 준용**

- ☐ 조특법 §100조의24①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7 가산세 [지법 §103조의57, 지령 §100조의32③] **법인세 규정 준용**

☐ 지법 §100조의30에 따른 가산세

구 분		가산세액	세무서 제출기한
①	무기장	▶ MAX (산출세액×20%, 수입금액×7/100,000)	
③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 미수취·허위수취 금액 × 0.2%	
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 × 0.02%	지급일 다음연도 2월말 (법법 §120)
⑥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불성실	▶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 × 0.1% ▶ 미발급·가공발급·허위수수분 공급가액 × 0.2%	계산서합계표; 2.10 (법법 §121)
⑧	신용카드거래 거부	▶ 건별 MAX (거부·불분명 금액×0.5%, 500원)	
⑨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0.1% ▶ 건별 MAX (거부·불분명 금액×0.5%, 500원)	가입: 해당업종 3월내 (법법 §117의2)

☐ 조특법 §100조의25에 의한 가산세

구 분	법인세 가산세액(㉠)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명세 신고불이행	▶ 무신고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4% ▶ 과소신고 : 과소신고 소득금액 2%	▶ ㉠ × 10% ▶ ㉠ × 10%
동업기업 특별징수불이행	▶ MAX (①, ②) ①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5% ② 무(과소)납부한 세액×일수×3/10,000	▶ ㉠ × 10%

【 Check 】

- ▶ 동업기업에 대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징수되어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내 전액 납부하여야 함

8 국세 준용 [지법 §103조의58]

☐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 §100조의14부터 §100조의 26까지 규정을 준용함.

V 개인지방소득세

① 납세의무자 **소득세 규정 준용**

-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②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법 834] **소득세 규정 준용**

-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특별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③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소득세 규정 준용**

- ☐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

④ 과세기간 **소득세 규정 준용**

-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
- 과세기간 : 1/1 ~ 12/31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1 ~ 사망한 날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1 ~ 출국한 날

⑤ 납세지

-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6조부터 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구분	납 세 지
거주자	· 원칙 : 주소지 · 예외 :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주지
비거주자	· 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예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장소

○ 특별한 경우의 납세지

구 분	과세대상 자산
상속 (소법§8①)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
납세관리인을 둔 비거주자 (소법§8②)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
국외 근무 공무원, 파견 임직원 (소법§8⑤, 소령§3·§5⑥)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

□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 Check 】

▶ 국세와 일부 납세지 차이가 있으며, 소득세법상 납세지 지정 제도(소법§9)는 지방소득세에 적용되지 않음

⑥ **비과세** **소득세 규정 준용**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⑦ **과세표준** **소득세 규정 준용**

□ 종합소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제118조의6, 제118조의7,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⑧ 세율

과세표준 구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1/1~3/23)		(3/24 ~)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0.6%	-	6%	-
4,600만원 이하	1.5%	10만8천원	1.5%	10만8천원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만2천원	2.4%	52만2천원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만원	3.5%	149만원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만원	3.8%	194만원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3.8%	239만원				

구분	내 용		지방소득세			소득세
			개정 전 ~3/23	개정 후 3/24~	개정 후 ~3/23 적용	
국내 자산	일반 지역	보유기간 2년 이상 부동산, 부동산 권리 (§103조의3①1호)	세율㉠	세율㉡	세율㉠	세율㉢

구분	내 용		지방소득세			소득세
			개정 전 ~3/23	개정 후 3/24~	개정 후 ~3/23 적용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자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103조의3①2호)	4%	4%	4%	4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03조의3①2호)	4%	세율㉔*	세율㉔	세율㉔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103조의3①3호)	5%	5%	5%	50%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03조의3①3호)	5%	4%	4%	40%
		※ 다주택자 관련 부분 (§103조의3①4호~7호)	5~6% (‘14년은 세율㉔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삭제 (세율㉔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세율㉔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삭제 (세율㉔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비사업용 토지 (§103조의3①8호)	6% (‘14년은 세율㉔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세율㉔ + 1%P, (‘14년은 세율㉔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세율㉔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세율㉔ + 10%P, (‘14년은 세율㉔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미등기양도 (§103조의3①10호)	7%	7%	7%	70%
	투기 지정 지역	1세대3주택 이상 주택(부수토지포함) (§103조의3⑤1호)	규정 없음	세율㉔ + 1%P,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경우 MAX (세율㉔ + 1%P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해당 없음	세율㉔ + 10%P,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경우 MAX (세율㉔ + 10%P 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 주택 (§103조의3⑤2호)				
		비사업용 토지 (§103조의3⑤3호)				
		그 밖에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103조의3⑤4호)				
국내 자산 (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3조의3①11호나목)		1%	1%	1%	10%
	그 밖의 주식(일반) (§103조의3①11호다목)		2%	2%	2%	20%
	중소기업외 법인의 주식 등(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103조의3①11호가목)		3%	3%	3%	30%
국내 자산 (기타)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A,B (§103조의3①1호)		세율㉔	세율㉔	세율㉔	세율㉔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103조의3①9호)		6% (‘14년은 세율㉔)	세율㉔ + 1%P, (‘14년은 세율㉔)	세율㉔	세율㉔ + 10%P, (‘14년은 세율㉔)

구분	내 용	지방소득세			소득세
		개정 전 ~3/23	개정 후 3/24~	개정 후 ~3/23 적용	
국외 자산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03조의3③1호)	세율㉑	세율㉒	세율㉑	세율㉒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103조의3③2호)	1%	1%	1%	10%
	중소기업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103조의3③2호)	2%	2%	2%	20%
	기타자산 (§103조의3③1호)	세율㉑	세율㉒	세율㉑	세율㉒

【 Check 】

- ▶ '14.1.1~3.23 기간 중 양도분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의 차이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하여 과세표준 1.5억원 초과시 세부담 차이 발생(지방세 < 국세의 10%)
- ▶ '14.1.1~3.23 기간 중 누진세율 적용자산(세율㉑)과 그 외 자산(세율㉒, 소금 누진세율 적용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지법§103조의6㉒를 적용하는 경우 세율㉑ 적용
(예) 세율㉑ 적용자산을 양도하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주택을 양도(4%)세율㉒로 개정)함으로 인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율㉑로 적용
※ 양도순서에 따른 세부담 차이 발생 방지

9 세액 공제·감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지특법 §93~§176)에서 규정
○ 국세 공제·감면의 10% 수준 별도 규정함

- ☐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조항

구분	국세	지특법	구분	국세	지특법
배당 세액공제	소법 \$56	\$95	농지대토 감면	조특법 \$70	\$131
가장 세액공제	소법 \$56조의2	\$9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 과세특례	조특법 \$70조의2	\$131조의2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소법 \$57	\$97	정치자금 세액공제	조특법\$76	\$164
재해손실 세액공제	소법 \$58	\$96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조특법\$77	\$132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법 \$59	\$94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 감면	조특법 \$77조의3	\$133
자녀 세액공제	소법 \$59조의2	\$97조의2	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 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 세액감면	조특법 \$85조의2	\$134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법 \$59조의3	\$97조의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조특법 \$85조의6	\$135
특별 세액공제	소법 \$59조의4	\$97조의4	국가 양도 산지감면	조특법 \$85조의10	\$136

구분	국세	지특법	구분	국세	지특법
급여 등 세액감면	소법 \$59조의5	\$98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94	\$137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시 적용순위 등	소법 \$60	\$17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조특법 \$96	\$138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법 \$90	\$163	장기임대주택 감면	조특법 \$97	\$139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5	\$99	신축임대주택 면제	조특법 \$97조의2	\$140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조특법 \$6	\$100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	\$141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조특법 \$7	\$101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2	\$14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102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3	\$14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11	\$103	비거주자의 주택취득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4	\$144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	\$104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5	\$14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 감면	조특법 \$12조의2	\$105	준공후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6	\$146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	조특법 \$18	\$106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7	\$14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특법 \$18조의2	\$106조의2	신축주택 등 과세특례	조특법 \$99조의2	\$148
공공차관 도입 과세특례	조특법 \$20	\$107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조특법 \$102	\$149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면제	조특법 \$21	\$108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104조의14	\$150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조특법 \$24	\$109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특법 \$104조의18	\$151
안전설비 투자 등 세액공제	조특법 \$25	\$1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조특법 \$104조의24	\$15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조의2	\$111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조특법 \$104조의25	\$165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조의3	\$112	외국인투자 감면	조특법 \$121조의2	\$15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5조의4	\$1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조특법 \$121조의8	\$154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26	\$114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	조특법 \$121조의9	\$15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29조의2	\$115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	조특법 \$121조의17	\$156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 감면	조특법 \$30	\$1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감면	조특법 \$121조의20	\$15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30조의2	\$11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감면	조특법 \$121조의21	\$15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30조의4	\$11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조특법 \$121조의22	\$159
중소기업간 통합 이월과세	조특법 \$31	\$119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조특법 \$122조의4	\$160
법인전환 이월과세	조특법 \$32	\$120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조특법 \$126조의3	\$16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33	\$12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126조의6	\$166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33조의2	\$122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세액공제	조특법 \$126조의7	\$162

구분	국세	지특법	구분	국세	지특법
주주 등 자산양도 과세특례	조특법 §40	\$123	중복지원 배제	조특법 §127	\$16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63	\$124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특법 §128	\$169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조특법 §64	\$125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조특법 §129	\$170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면제	조특법 §66	\$1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감면 배제	조특법 §130	\$171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면제	조특법 §67	\$127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감면 등 배제	조특법 §132	\$172
농업인 등 면제	조특법 §68	\$128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조특법 §133	\$173
자경농지 감면	조특법 §69	\$129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법 §144	\$174
축사용지 감면	조특법 §69조의2	\$130	감면세액의 추정	조특법 §146	\$175

9 신고·납부

☐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와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

○ 단, 납세지오류로 인한 수정신고의 경우 부과지를 받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 부과지 전 수정신고·경정청구시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없음

10 법 가산세

☐ 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 가산세 [지법 §99]

구분	가산세액
①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불분명분 지급금액 × 0.02% (3개월 이내 제출시 1%)
②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분 공급금액 × 0.1%(0.05%) ▶미발급·가공발급·허위수수분 공급금액 × 0.2%
③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미수취·허위수취 금액 × 0.2%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제외)
④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 × 0.1%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 추계자 제외)
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무(과소)신고수입금액 × 0.05%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에 한함)
⑥ 공동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미등록·허위등록 : 총수입금액 × 0.0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총수입금액 × 0.01%
⑦ 무기장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
⑧ 사업용계좌미사용	▶미사용금액 × 0.02% ▶미신고 MAX(미신고기간수입금액×0.2%, 미사용금액×0.2%)

구 분		가산세액
⑨	신용카드거래 거부	▶건별 MAX (거부·불분명 금액×0.5%, 500원)
⑩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0.1% ▶건별 MAX (거부·불분명 금액×0.5%, 500원)
⑪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영수증 사실과 다르게 발급금액 × 0.2% ▶기부자별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 0.02%
⑫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미제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0.5%
⑬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 0.05%

【 2015년 가산세 개정안 】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3항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 개인지방소득(양도소득) 가산세 [지법§103조의8]

구분		가산세액
①	기장불성실	산출세액 × 미기장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7/10,000)

【 2015년 가산세 개정안 】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 Check 】

- ▶ 지방세는 의무위반별 가산세 한도 규정 없음
- ▶ 파소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이 다름 : 국세는 파표안분, 지방소득세는 세액으로 계산
- ▶ 지방세는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없음
- ▶ 지방세는 무기장 가산세 등과, 무신고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비교하여 적용하는 규정 없음 단, 국세와 동일하게 개정 진행 중

VI 과세체계 개편 전·후 비교 요약

구분			개편 전 (부가세 방식)	개편 후 (독립세 방식)	비고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	동일		
납세지	개 인		소득세 신고일 현재 주소지	소득세 신고일 현재 주소지	동일		
	법 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안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안분			
	특별징수		지급받는 자 근무지 등	지급받는 자 근무지 등			
비과세			반영된 과세표준 적용	국세 준용	동일		
과세표준	개인	종합소득	소득세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준용	결정세액 →과세표준 준용 (단, 특징 동일)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준용			
		특별징수		원천징수 소득세액			
	법인	신 고	법인세액	법인세 과세표준			
특별징수		원천징수 법인세액					
세율	개인	종합소득	10%(부가세율)	독립세율 0.6 ~ 3.8%	부가세율→ 별도세율 (단, 특징 동일)		
		양도소득		독립세율 0.6 ~ 7%			
		특별징수		10%(부가세율)			
	법인	신 고	10%(부가세율)	독립세율 1.0~2.2%			
특별징수		10%(부가세율)					
감면	개인		반영된 과세표준 적용	지특법 별도 규정 국세 감면의 10%수준	신설		
	법인			지특법 별도 규정 없음 (단, 조합법인 세율특례)	규정 없음		
징수방법	신고 납부	개인	세무서 신고, 지자체 납부	지자체 신고·납부 (2016년 말까지 좌동)	지자체 일원화		
		법인	지자체 신고·납부	지자체 신고·납부	동일		
	결정 경정	개인	세무서 처리	지자체 처리 (2016년 말까지 좌동)	지자체 일원화		
		법인	지자체 처리	지자체 처리	동일		
	특별 징수	개인		지자체 납부	지자체 납부	동일	
		법 인	내국	없음	지자체 납부 (2015.1월부터 시행)	신설	
				외국	지자체 납부	지자체 납부	동일

VII 지방소득세·국세 가산세 비교 요약

가산세 종류		지방세	국세	유의 사항	비고
무신고	일반	• 산출세액 × 20%	• MAX(①, ②) ①(산출세액-기납부세액) × 20% ②(수입금액-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 지방세 기납부세액 차감 규정 없음 • 지방세 수입금액 가산세 계산 규정 없음	지기법§53조의2
	부정	• 산출세액 × 40%	• MAX(①, ②) ①산출세액 × 40% ②수입금액 × 14/10,000	• 지방세 수입금액 가산세 계산 규정 없음	지기법§53조의2
과소신고	일반	• (과소신고 세액 - 부정 과소신고세액) × 10%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 지방세 세액으로 계산, 국세 과표안분	지기법§53조의3
	부정	• 부정 과소신고세액 × 40%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 지방세 세액으로 계산, 국세 과표안분	지기법§53조의3
	공제·감면	규정 없음	• 부정행위 세액 감면·공제 금액 × 40%	• 지방세 부정 공제·감면 가산세 없음	
초과환급	일반	규정 없음	• 초과환급세액 × 10%		
	부당	규정 없음	• 초과환급세액 × 40%		
가산세 감면	요건	▶ 신고와 동시 납부			
	기한후 신고	• 1개월 내 50%	• 1개월 내 50% • 6개월 내 20%	• 지방세 20% 감면 없음 • 지방세 법 가산세 감면 없음 (\$99, §103조의30 제출 불성실 등)	지기법§54 • “동시 납부” 요건 삭제 개정 검토 중
	수정 신고	• 6개월 내 50%, 1년 내 20%, 2년 내 10%			
납부 (환급) 불성실	납부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지기법§53조의4
	환급	규정 없음	• 초과환급세액 × 3/10,000 × 경과일수		
특별(원천)징수 불이행	• 미납세액 × 5%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국세 5%, 지방세 3%	지기법§53조의5
기본법, 법 가산세 중복	• 무기장, 기장불성실 가산세 모두 적용		• 무기장, 기장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중 큰 금액 적용	• 지방세 비교 적용 규정 없음	• ‘15개정(안) 비교 적용 반영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규정 없음		건당 2,000원(1,000원)		조특법§90조의2

Ⅷ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지방소득세]

서식 목록

[서식 40]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44
[서식 41]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45
[서식 4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46
[서식 42의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47
[서식 42의3]	징수교부금 청구서	49
[서식 4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51
[서식 43의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53
[서식 43의3]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55
[서식 43의4]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57
[서식 43의5]	(갑)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59
[서식 43의5]	(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61
[서식 43의6]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63
[서식 43의6]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65
[서식 43의7]	(갑)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일반법인용)	67
[서식 43의7]	(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연결법인용)	69
[서식 43의8]	(전산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71

[서식 43의9]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72
[서식 43의10]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74
[서식 4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76
[서식 44의2]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78
[서식 44의3]	(갑)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	80
[서식 44의3]	(을)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	82
[서식 44의4]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84
[서식 44의5]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86
[서식 4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88
[서식 45]	(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90
[서식 45의2]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92
[서식 45의3]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93
[서식 45의4]	외국법인 증여소득 신고서	94
[서식 45의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95
[서식 45의6]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96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4.8.8>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군·구 보관용)															
주 소(납세지)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주 소(납세지)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수납기관 귀하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주 소(납세지)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수납기관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4.8.8>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우체국

받는 사람

※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우 편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세납부기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원

납 기 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지 방 소 득 세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납 기 후	년 월 일까지	가 산 금	원	원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 세 무 서 장 인

수납인

※ 납부장소: 전국우체국·농협 또는 관내금융기관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입니다.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납 기 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납 기 후	년 월 일까지	가 산 금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시·군·구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 수납기관 귀하

수납인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영수필 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연도	회계	신구	발행번호	세입징수관	동	검
주소(납세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귀속연도						
소득 구분						

납 기 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원
납 기 후	년 월 일까지	가 산 금	원
		계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4.8.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납 부 자	성명(상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년 월분(지급 월 일)				
① 세목	지방소득세	② 신고하는 시·군·구		
③ 납부액	일금	원정		
구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⑥ 사업소득				
⑦ 근로소득				
⑧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퇴직소득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⑫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⑬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⑭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⑮ 가감세액(조정액)				
계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인		년 월 일 ○○○ 수납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납 부 자	성명(상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년 월분(지급 월 일)				
① 세목	지방소득세	② 신고하는 시·군·구		
③ 납부액	일금	원정		
구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⑥ 사업소득				
⑦ 근로소득				
⑧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퇴직소득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⑫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⑬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⑭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⑮ 가감세액(조정액)				
계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납 부 자	성명(상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년 월분(지급 월 일)				
① 세목	지방소득세	② 신고하는 시·군·구		
③ 납부액	일금	원정		
구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⑥ 사업소득				
⑦ 근로소득				
⑧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퇴직소득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⑫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⑬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⑭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⑮ 가감세액(조정액)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97mm × 210mm(미색모조 80g/m²)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신설 2014.8.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작성 방법

☐ 인적사항(특별징수의무자)란

-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특별징수 명세

- ⑨ 소득종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및 가감세액(조정액)]을 적습니다.
- ⑪ 납세의무자: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3서식] <신설 2014.8.8>

징 수 교 부 금 청 구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특별징수 의무자 (납세조합)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청구내역	⑧구분		⑨인원		
	⑩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⑪납부한 세액		
	⑫청 구 액		금 원		

「지방세법」 제103조의1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에 따라 위의 징
수교부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 음
------	------	------------

작성 방법

□ 인적사항(특별징수의무자)란

-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청구내역란

- ⑧ 구분: 특별징수분의 종류인 이자·배당·근로·사업·퇴직·기타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⑨ 인원: 해당 월에 신고납부한 인원수를 적습니다.
- 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해당 월에 신고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을 적습니다.
- ⑪ 납부한 세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총액 중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 ⑫ 청구액: 납부한 세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교부율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⑫수시부과기간																																																																																			
<table border="1"> <tr> <td colspan="2">⑬법 인 구 분</td> <td colspan="4">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td> <td colspan="2">⑭조 정 구 분</td> <td colspan="2">1. 외부 2. 자기</td> </tr> <tr> <td rowspan="5">영리 법인</td> <td>상 장 법 인</td> <td>11</td> <td>71</td> <td>81</td> <td>91</td> <td rowspan="5">당기순이익 과세</td> <td rowspan="5">⑮외 부 감 사 대 상</td> <td colspan="2">1. 여 2. 부</td> </tr> <tr> <td>코스닥상장법인</td> <td>21</td> <td>72</td> <td>82</td> <td>92</td> <td colspan="2">1. 정기신고</td> </tr> <tr> <td>기 타 법 인</td> <td>30</td> <td>73</td> <td>83</td> <td>93</td> <td colspan="2">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td> </tr> <tr> <td>비 영 리 법 인</td> <td>60</td> <td>74</td> <td>84</td> <td>94</td> <td>50</td> <td colspan="2">3. 기한후 신고</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 colspan="2">4. 중도폐업신고</td> </tr> <tr> <td colspan="2">⑯법 인 유 형 별 구 분</td> <td colspan="4"></td> <td>코드</td> <td>⑰결 산 확 정 일</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⑱신 고 일</td> <td colspan="4"></td> <td></td> <td>⑲납 부 일</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⑳신고기한 연장승인</td> <td colspan="4">1. 신청일</td> <td></td> <td>2. 연장기한</td> <td colspan="2"></td> </tr> </table>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당기순이익 과세	⑮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1. 정기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3. 기한후 신고							4. 중도폐업신고		⑯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⑰결 산 확 정 일			⑱신 고 일							⑲납 부 일			⑳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당기순이익 과세	⑮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1. 정기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3. 기한후 신고																																																																															
								4. 중도폐업신고																																																																																
⑯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⑰결 산 확 정 일																																																																																	
⑱신 고 일							⑲납 부 일																																																																																	
⑳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㉒주식변동		1		2		㉒장부전산화		1		2																																																																														
㉓사업연도의제		1		2		㉓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㉔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㉕수 입 금 액	()		
㉕과 세 표 준			
㉖산 출 세 액			
㉗총 부 담 세 액			
㉘기 납 부 세 액			
㉙차 감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 는 경우)	㉚에 입 처	은행	(본)지점
	㉚에 금 주		
	㉚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법 인)
신고인(대표자)

년 월 일
(인)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	-------

제출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수수료 없음
------	--	--------

신고안내

1.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별지 제43호의7서식)"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⑩결산확정일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㉔신고기한 연장승인란: 「지방세법」 제103조의51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㉔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㉔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㉔사업연도외제 여부란: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㉔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란: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8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㉔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㉔수입금액 ~ ㉔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9. ㉔산출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㉔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㉔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㉔충부담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㉔란, ㉔란 및 ㉔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㉔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㉔예입처 ~ ㉔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① 각 사업 연도 소득 계산	⑩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소득조정액	⑪ 익 금 산 입			
		⑫ 손 금 산 입			
	⑬ 차 가 감 소득 금액 (⑩ + ⑪ - ⑫)				
	⑭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② 과 세 표 준 계산	⑭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이 월 액 손금산입				
	⑮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⑩ + ⑭ - ⑬)				
	⑯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⑩ = ⑮)				
	⑰ 이 월 결 손 금				
	⑱ 비 과 세 소 득				
③ 산 출 세 액 계산	⑲ 소 득 공 제				
	⑳ 과 세 표 준				
	㉑ 선 박 표 준 이 익				
	㉒ 과 세 표 준 (⑲ + ㉑)				
	㉓ 세 율				
④ 납 부 할 세 액 계산	㉔ 산 출 세 액 (㉒ × ㉓)				
	㉕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공 제 감 면 세 액				
	㉖ 차 감 세 액				
	㉗ 최 저 한 세 적 용 제 외 공 제 감 면 세 액				
	㉘ 가 산 세 액				
⑤ 토 지 등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계 산	㉙ 가 감 계 (㉔ - ㉖ + ㉗)				
	㉚ 기 납부세액				
	㉛ 수 시 부 과 세 액				
	㉜ () 세 액				
	㉝ 계 (㉚ + ㉛)				
⑥ 세 액 계 산	㉞ 차 감 납부할세액 (㉙ - ㉝)				
	㉟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㊱ 분 납 세액 계산 범위액 (㉙ - ㉟ - ㉛ - ㉜ + ㉝)				
	㊲ 현 금 납 부				
	㊳ 물 납				
⑦ 기 타 납 부 세 액	㊴ 계 (㊲ + ㊳)				
	㊵ 현 금 납 부				
	㊶ 물 납				
	㊷ 계 (㊵ + ㊶)				
	㊸ 신고납부전가산세액				
⑧ 합 계	㊹ 합 계 (㊷ + ㊸)				
	㊺ 중 간 예 납 세 액				
	㊻ 수 시 부 과 세 액				
	㊼ 특별정수납부 세 액				
	㊽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⑨ 기 타 납 부 세 액	㊾ 소 계 (㊺ + ㊻ + ㊼ + ㊽)				
	㊿ 신고납부전가산세액				
	㋀ 합 계 (㊾ + ㊿)				
	㋁ 중 간 예 납 세 액				
	㋂ 수 시 부 과 세 액				
⑩ 기 타 납 부 세 액	㋃ 특별정수납부 세 액				
	㋄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 소 계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 합 계 (㋅ + ㋆)				

작성방법

1. ㉔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㉔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㉔선박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㉔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세율란(㉔, ㉔):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4. ㉔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㉔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㉔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㉔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㉔산출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50의 규정에 따라 "㉔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1을 적습니다.
7. ㉔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㉔아월과세액란의 합계 금액과 ㉔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8. 가산세액란(㉔·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 계란(㉔·㉔): 수시부과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㉔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1.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서식] <개정 2014.8.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1.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거법조항	③ 대상세액	④ 세액
합	계		

2. 이월과세액

⑤ 구 분	⑥ 근거법조항	⑦ 이월과세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합	계	

3. 추가납부세액

⑧ 구 분	⑨ 근거법조항	⑩ 대상금액	⑪ 세액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29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사업시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32조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 103조의51		
합	계		

적 세 방 법

1. 공제(감면)세액란

- ① 구분란 :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등 조문명을 적습니다.
- ③ 대상세액란 :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적습니다.
- ④ 세액란 :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 이월과세액란

- ⑤ 구분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 ⑦ 이월과세액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 추가납부세액란

- ⑧ 구분란 : 「지방세법」상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납부되는 경우의 조문명을 적습니다.
- ⑪ 세액란 :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4.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⑬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서식] <신설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수입금액		20/100 7/100,000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100			산출세액		20(10)/100		
	부정	산출세액	40(20)/100			산출세액		40(20)/100		
과소 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산출세액		1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산출세액		40/100		
납부 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3/10,000			(일수) 미납세액	()	3/10,000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불분명	미(누락)제출금액 불분명 금액	2/1,000			합 계				
	소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주식등 변상환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소 계	2/1,000 2/1,000 2/1,000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불분명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액면(출자)금액	5/10,000 5/10,000							
	소 계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0							
계산서	계산서(가공 (위장)수주	공급가액	2/1,00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 공급가액	1/1,000 1/1,000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소 계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0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0							
	소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건 수 소 계	5/1,000 500원							
	현금영수증 가맹점미입 수입금액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1/1,000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 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10,000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합 계										

2.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⑦ 구분	⑧ 당초 과세표준	⑨ 당초 산출세액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⑩ 부정과소 신고 과세표준	⑪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⑩)×세율	⑫ 부정 과소 신고분 세액 (⑪-⑨)	⑬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⑬)×세율	⑮ 과소신고분 세액 (⑭-⑨)	⑯ 일반 과소 신고분 세액 (⑮-⑫)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①)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큰 금액을 ⑥가산세액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3)

⑧란과 ⑨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⑧란과 ⑩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⑬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란에는 ⑧란과 ⑬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⑮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⑯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와 ⑯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②)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③)

미수취 금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④)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8.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⑤)

미제출금액 등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9.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⑥)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⑦)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⑧ 및 §103조의30⑨)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 5백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⑩)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㉓란 및 ㉔란에 각각 적습니다.

14.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103조의54⑪)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명세내용

[illegible]

(뒤쪽)

작성방법

1. ①적요 ~ ⑥법인세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지방소득세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을)]"의 ⑬법인지방소득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⑭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뒤쪽)

작성방법

1. ①채권등의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란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 서식(갑)]"의 ⑧법인지방소득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⑯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서식] <신설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산 출 세 액		
	⑰가 산 세 액		
	⑱가 감 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특별징수납부 세 액	
		⑳ ()세 액	
		㉑계(⑲+⑳)	
㉒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⑱-㉑)			
환 급 금 계 좌	㉓예 입 처	은행 (본)지점	
	㉔예 금 주		
	㉕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①소재지 ~ ⑩비과세소득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⑭과세표준란 :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⑮세율란 :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⑯산출세액란 : ⑭과세표준에 ⑮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⑰가산세액란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신설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납부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3/10,000	
기 타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⑥ 구 분	⑦ 당초 과세표준	⑧ 당초 산출세액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⑨ 부정 과소신고 과세표준	⑩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⑦+⑨) ×세율	⑪ 부정 과소신고분 세액 (⑩-⑧)	⑫ 과소신고 과세표준	⑬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⑦+⑫) ×세율	⑭ 과소신고분 세액 (⑬-⑧)	⑮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 (⑭-⑪)
각 사업연도소득									

(뒤쪽)

작성방법

1. 과소신고 가산세

⑦란과 ⑥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⑨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⑩란에는 ⑦란과 ⑨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⑪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⑬란에는 ⑦란과 ⑫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⑭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⑪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⑮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⑪와 ⑮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7서식(갑)] <신설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 (일반법인용)

([]기한 내 []기한 후)

관리번호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납세자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⑤사업장명	⑥전화번호
	⑦사업장주소	
	⑧본점주소	

납 부 명 세

⑨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⑩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⑪ 납부할 세액	일금 원정(W)

세 액 명 세

⑫ 법인세 산출세액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

⑭ 안분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				종업원·건축물 평균 비율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⑮ 사업장별 산출세액	⑯ 세액공제 · 감면액
⑰ 가산세액	⑰ 기납부세액
⑲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⑳ 납부할 세액
㉑ 법인세 총액	㉒ 지방소득세 총액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제103조의2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수수료 없 음
------	----------------------	------------

접수증[법인지방소득세(년 귀속) 신고서]

법인명		소재지	
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 방 소 득 세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V로 표시합니다.

☐ 납세자란

-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⑤ 사업장명: 해당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⑥ 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사업장주소: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⑧ 본점주소: 해당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 ⑨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법인세 해당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⑩ 법인세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 ⑪ 납부할 세액: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⑳ 납부할 세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제1항)을 적용한 세액을 적습니다.
- ⑮ 사업장별산출세액: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⑭ 안분비율 × 납세지별 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제2항) /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제1항)"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⑯ 세액공제 · 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 감면액을 적습니다.
- ⑰ 가산세액: 납세지별로 안분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⑱ 기납부세액: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⑲ 경정 · 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㉔ 납부할 세액: "⑮ 사업장별산출세액 - ⑯ 세액공제 · 감면액 + ⑰ 가산세액 - ⑱ 기납부세액 ± ⑲ 경정 · 수정신고 등 가감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㉕ 법인세 총액: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을 적습니다.
- ㉖ 지방소득세 총액: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구) 과(☎)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납세자란

- ① 법인명: 연결모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⑤ 연결모법인 본점주소: 연결모법인의 본점주소를 적습니다.

□ 납세자-연결법인란

-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 ⑥ 사업장명: 해당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연결법인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⑦ 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⑧ 사업장주소 및 본점주소: 해당 사업장의 주소 및 해당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 ⑨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법인세 해당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⑩ 법인세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 ⑪ 납부할 세액: 연결집단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⑪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중 납부할 세액란의 합계와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 ⑬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제1항)을 적용한 연결산출세액(※)을 적습니다. ※연결집단 전체의 세액
- ⑭ 안분비율: 시군구내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할 경우 연결법인별로 안분비율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 ⑮ 법인세 총액: 연결집단이 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을 적습니다.
- ⑯ 지방소득세 총액: 연결집단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을 적습니다.
- ⑰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 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사업장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 ⑭ 안분비율 × 납세지별 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제2항) /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제1항)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 · 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 · 감면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로 안분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기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 · 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 "사업장별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액 + 가산세액 - 기납부세액 ± 경정 · 수정신고 등 가감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구) 과(☎)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8서식(전산용)] <신설 2014.8.8>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기관번호</td> <td style="width: 50%;">세목</td> </tr> <tr> <td>납세연월기</td> <td>과세번호</td> </tr> </table> 전자납부번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50%;">세 목</td> <td style="width: 50%;">납부할 세액</td> </tr> <tr> <td>지 방 소 득 세</td> <td></td> </tr> </table>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세 목	납부할 세액	지 방 소 득 세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검 영수증 (납세자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10%;">납세번호</td> <td style="width: 10%;">과세기관</td> <td style="width: 10%;">검 회계</td> <td style="width: 10%;">과목</td> <td style="width: 10%;">세목</td> <td style="width: 10%;">연도</td> <td style="width: 10%;">월</td> <td style="width: 10%;">기분</td> <td style="width: 10%;">입면동</td> <td style="width: 10%;">과세번호</td> <td style="width: 10%;">검</td> </tr> </table> 납 세 자: _____ 사업장소재지: _____ 법 인 세 액: _____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_____ 납세자번호: _____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33%;">세 목</td> <td style="width: 33%;">납부할 세액</td> <td style="width: 34%;">과세 표준</td> </tr> <tr> <td>지 방 소 득 세</td> <td></td> <td></td> </tr> </table> 담당자 문의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입면동	과세번호	검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 표준	지 방 소 득 세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세 목	납부할 세액																									
지 방 소 득 세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입면동	과세번호	검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 표준																								
지 방 소 득 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증

법 인 명: _____ 귀속사업기간 : _____

사업장명: _____

사업장소재지: _____

신고인(대리인)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자

구분	종업원(명)	건축물(㎡)				종업원 건축물 평균비율
		합계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법인전체						%
시·군·구 내						
비율(%)						
법인세 총액		지방소득세 총액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제103조의37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납 부 장 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지방세 안내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서식] <신설 2014.8.8>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업태 · 종목
⑤ 소 재 지	

2. 사업연도

⑥ 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⑧ 결손금액	⑨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	---------------

4.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⑩ 과세표준	⑪ 세 율	⑫ 산출세액	⑬ 공제감면세액	⑭ 차감세액 (⑫-⑬)

5. 환급신청세액 계산

⑮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⑮=⑫)	⑯ 차감할 세액 [(⑩-⑨)×세율] [⑯≥(⑫-⑭)]	⑰ 환급신청세액 (⑮-⑯) (⑰≤⑭)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수수료 없 음
------	--	------------

(뒤 쪽)

작성방법

1. ⑧결손금액란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 : ⑧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⑩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⑩과세표준 및 ⑬공제감면세액란 :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⑪·⑯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
5. ⑫산출세액란 : ⑩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⑮직전사업연도법인지방소득세액란 : ⑬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⑫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⑯차감할 세액란
 - 가. ⑩란의 과세표준에서 ⑨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 나. ⑬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⑬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⑰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4.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적습니다.

1. ⑥결손사업연도 ~ ⑩과세표준란 :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⑪세율 ~ ⑰ 환급신청세액란 :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10% 금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구) 과(☎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0서식] <신설 2014.8.8>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① 신고인 (양도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연도	양도연월	전화번호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② 양수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특별 징 수 세 액 공 제							
⑮ 가산세	신 고 불 성 실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납 부 불 성 실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계						
⑯ 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 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⑩-⑪-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 자 진 납 부 세 액							
⑳ 환 급 세 액							
㉑ 환 급 금 계 좌	예입처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2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뒤쪽참조
----------------------	------

(뒤 쪽)

제출서류	1. 매매계약서 1부 2. 감면신청서 1부 3. 그 밖에 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자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작성 방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 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양도연월은 신고대상인 과세 자산을 양도한 연월을 적습니다.
4. ⑩산출세액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특별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6. 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 40%)·납부불성실(일 3/10,000)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8. ⑰납부할세액란 및 ⑳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9. ㉑환급금 계좌란: 송금받을 법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4.8.8>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연 결 모 법 인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인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전자우편주소		
	⑦ 소재지			
⑧ 연결사업연도	⑨ 법인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30	일반기업 중견기업 73 상호출자제한기업 83 그외기업 93	⑩ 조정구분 1.외부 2.자기
⑪ 신고 구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⑫ 법인세신고일	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⑭ 사업연도의제 1.여 2.부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⑮ 연 결 수 입 금 액	()		
⑯ (연 결) 과 세 표 준			
⑰ 연 결 산 출 세 액			
⑱ 총 부 담 세 액			
⑲ 기 납 부 세 액			
⑳ 차 감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	㉑예입처은행 (본)지점	㉒예금주	㉓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수수료 없음
------	--	-----------

신 고 안 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뒤 쪽)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⑫법인세신고일란, ⑭사업연도의제 및 ⑮연결수입금액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란 :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3. ⑯연결과세표준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⑥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서식 ⑮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⑰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서식 ⑮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⑱총부담세액란의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에서 ㉑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서식 ㉒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⑲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㉑기납부세액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㉒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㉓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⑱총부담세액에서 ⑲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㉔예입처 ~ ㉖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9.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서식] <신설 2014.8.8>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자법인구분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연결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과세 표준계산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② 연결 소득 개별 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③ 연결 이월결손금					
		④ 비 과 세 소 득					
		⑤ 소득공제액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②-③-④-⑤)					
	연결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	⑦ 세 율					
		⑧ 연결산출세액					
		⑨ 연 결 세 율(⑧÷⑥)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⑥×⑨)					
		⑪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⑫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⑬ 가산세액					
		⑭ 가 감 계(⑩+⑬)					
		기납부 세액	기한내 납부	⑮ 중간예납세액			
				⑯ 특별징수납부세액			
				⑰ ()세액			
				⑱ 소 계(⑮+⑯+⑰)			
				⑲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⑳ 합 계(⑱+⑲)			
		㉑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㉒ 차감 납부할 세액(⑭-⑳+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양도 차익	㉓ 등기자산			
				㉔ 미등기자산			
㉕ 비과세소득							
㉖ 과세표준							
㉗ 세율							
㉘ 연결산출세액							
㉙ 감면세액							
㉚ 공제세액							
㉛ 가산세액							
㉜ 가 감 계(㉘-㉙-㉚+㉛)							
세액계	㉝ 기납부세액						
	㉞ 차 감 납 부 할 세 액(㉜-㉝)						
	㉟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㉞+㉟)						
	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㊲ 납 부 할 세 액(㉟-㊱)						
	㊳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㉟-㉙-㉚-㉛+㉜+㉝)						
	분납할 세액	㊴ 현금납부					
		㊵ 물납					
		㊶ 계					
	차감납부 세액	㊷ 현금납부					
㊸ 물납							
㊹ 계							

(뒤쪽)

작성방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⑧연결산출세액란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⑬가산세액란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⑥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지출증빙등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모법인은 ⑥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기납부세액란 (㉔・㉓) : 기한 내 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7. ㉒가산세액란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㉒토지등양도소득란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8.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신설 2014.8.8>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납부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3/10,000	
합	계				

⑦자진납부기한

⑧고지일 또는 납부일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⑨연결법인명	합 계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가산세	⑫토지등 양도소득					
	⑬지출증빙 등					
	⑭합 계					

3. 연결집단 과소신고 신고세액 계산

⑮구 분	⑯ 당초 과세표준	⑰ 당초 산출세액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⑮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⑰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⑮+⑮) ×세율	⑱ 부정과소신고분세액 (⑰-⑰)	⑲ 과소신고과세표준	⑲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⑲+⑲) ×세율	⑳ 과소신고분세액 (⑲-⑲)
각 사업연도소득								

작성방법

※ 연결모법인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 ⑯란과 ⑰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⑱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⑲란에는 ⑯란과 ⑱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⑳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㉑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㉒란에는 ⑯란과 ㉑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㉓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㉒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㉔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㉕과 ㉖란에 ㉔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㉗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44호의3서식(을)]"의 ㉘가산세액란 중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고, ㉙지출증빙 등란에는 같은서식의 지출증빙등 관련 가산세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신설 2014.8.8>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지방소 득세분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납부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3/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 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0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2/1,000		
	불분명	불분명금액			2/1,000		
	소 계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000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000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0		
	소 계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10,000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0		
	소 계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0		
	계산서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1,000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1,000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소 계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0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0		
	소 계						
신용카드 및 현 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0			
		건 수		500원			
		소 계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가맹일수) 수입금액	()	1/1,000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 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10,000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분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⑦ 구분	⑧ 당초 과세표준	⑨ 당초 산출세액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⑩ 부정과소 신고 과세표준	⑪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⑩)×세율	⑫ 부정 과소 신고분 세액 (⑪-⑨)	⑬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⑬+⑬)×세율	⑮ 과소신고분 세액 (⑭-⑨)	⑯ 일반 과소 신고분 세액 (⑮-⑫)
과소신고									

(뒤쪽)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44호의 3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3)

⑧란과 ⑨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⑧란과 ⑩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⑬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란에는 ⑧란과 ⑬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⑮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⑯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와 ⑯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법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②)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③)

미수취 금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④)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⑤)

미제출금액 등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⑥)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8.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⑦)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9.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⑧·⑨)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 5백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03조의30⑩)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를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서식] <신설 2014.8.8>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연결법인 기본사항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연결사업연도				
⑤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모법인명			⑫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법인구분		⑭조정구분		⑮외부감사대상여부			
1. 내국 2.외투(비율 %)		1.외부 2.자기		1.여 2.부			
⑯법인종류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중소기업		11	21	30		60
	일반 기업	중견기업	71	72	73		74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그외 기업		91	92	93	94		
⑰신고구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⑱주식변동			⑲장부전산화				
1. 여, 2. 부			1. 여, 2. 부				
⑳사업연도의제			㉑결산확정일				
1. 여, 2. 부							

2.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연 결 전	㉒수입금액	()		
	㉓결산서상 당기순손익			
	㉔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연 결 후	㉕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㉖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㉗과세표준 개별귀속액			
	㉘연결법인의 산출세액			
	㉙충부담세액			
	㉚기납부세액			
	㉛차감납부할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㉑법인명 ~ ㉔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㉕연결소득개별귀속액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㉕연결 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㉖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㉖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㉗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㉘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㉘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㉙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㉚총부담세액란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㉚가감계란의 금액에서 ㉛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㉛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㉜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㉜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식의 ㉝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㉞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㉚총부담세액에서 ㉜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5서식] <신설 2014.8.8>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결전도소득	각사업연도소득	① 결산대상당기순이익		35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31-32-33-34)	
		소득조정 금액		36 연결세율	
		② 익금산입		37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35×36)	
	계산	③ 손금산입		38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④ 차가감 소득금액(①+②-③)		39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40 가산세액	
		⑥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41 가감계 (37-38-39+40)	
연결법인별 조정항목	제거	⑦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④+⑤-⑥)		42 중간예납세액	
		⑧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43 특별징수납부세액	
		⑨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44 ()세액	
		⑩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45 소 계 (42+43+44)	
	잔액	⑪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46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⑫ 차가감계(⑦+⑧-⑨-⑩+⑪)		47 합계 (45+46)	
		⑬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48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법인간	⑭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		49 차감 납부할 세액 (41-47+48)	
		⑮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50 등기자산	
		⑯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51 미등기자산	
		⑰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52 비과세소득	
	전체	⑱ 익금불산입		53 과세표준 (50+51-52)	
		⑲ 익금산입		54 세율	
		⑳ 손금불산입		55 산출세액	
연결조정항목	배분액	㉑ 손금산입		56 감면세액	
		㉒ 차가감 계 (12-13+14+15-18+19+20-21)		57 공제세액	
		㉓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58 가산세액	
		㉔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59 가감계 (55-56-57+58)	
	산출세액의 개별귀속액	㉕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22-23+24)		60 기납부세액	
		㉖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61 차감납부할세액 (59-60)	
		㉗ 연결법인의 기부금 금산입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62 차감납부할 세액 계 (49+61)	
연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㉘ 연결수정소득금액(㉕+㉖-㉗)		6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㉙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64 납부할세액 (62-63)	
		㉚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28+29)			
		㉛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연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㉜ 연결 이월 결손금 공제			
		㉝ 비과세소득			
		㉞ 소득공제액			

(뒤쪽)

적용방법

*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항목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4.8.8>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청산인성명	
⑦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⑧ 업 태	⑨ 종 목	⑩ 계산구분 [√] 확정 [] 중간	
⑪ 해산등기일		⑫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⑬ 직전 사업연도		⑭ 의제 사업연도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계
⑮ 과 세 표 준			
⑯ 세 율			
⑰ 산 출 세 액			
⑱ 가 산 세 액			
⑲ 공 제 세 액			
⑳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재무상태표	수수료 없 음
------	-------	------------

신 고 안 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법인세법 제85조의 중간신고 제외)와 동시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법인명 ~ ⑨종목란 및 ⑪해산등기일 ~ ⑮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⑯가산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5호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부표] <신설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100			산출세액		20(10)/100		
	부정	산출세액		40(20)/100			산출세액		40(20)/100		
과소 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산출세액		1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산출세액		40/100		
납부 불성실	납부 미납세액	(일수) 미납세액	()	3/10,000			(일수) 미납세액	()	3/10,000		
기타							합 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⑦ 구분		⑧ 당초 과세표준	⑨ 당초 산출세액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⑩ 부정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⑩)×세율	⑫ 부정 과소신고분 세액 (⑪-⑨)	⑬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⑬)×세율	⑮ 과소신고분 세액 (⑭-⑨)	⑯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 (⑮-⑫)
청산소득	과소 신고									
토지등 양도소득	과소 신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2. 과소신고가산세

⑧란과 ⑨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⑧란과 ⑩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⑬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란에는 ⑧란과 ⑬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⑮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⑯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와 ⑯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신설 2014.8.8>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법 인 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소 재 지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주소

2.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⑥ 법 인 명	⑦ 사업장등록번호
⑧ 소 재 지	⑨ 사업연도

⑩ 양도 일자 등	내국법인 주식 현황				신고인등의 주식 소유 · 양도 현황						비율		⑮ 원천징수 여 부
					소유			양도					
	⑪ 기초	⑫ 증자	⑬ 감자	⑭ 계	⑮ 신고인	⑯ 특 수 관계자	⑰ 계	⑱ 신고인	⑲ 특 수 관계자	⑳ 계	㉑ 소유	㉒ 양도	
합 계													

3. 원천(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㉔ 양도 일자	양도내역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비고
	㉕ 양도주식수	㉖ 양도금액	㉗ 양도금액	㉘ 양도차익	㉙ 세율	㉚ 세액	㉛ 납부할 세액 (㉚X10%)	
합 계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가증권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신고안내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①법인명 ~ ㉚법인세 세액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5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㉛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 ㉚법인세 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신설 2014.8.8>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소득(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② 납세관리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		⑤ 거주지국 코드					
지급(양수)자	⑥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⑦ 납세관리번호					
	⑧ 주 소							
	⑨ 거 주 지 국		⑩ 거주지국 코드					
유가증권 발행법인	⑪ 법 인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소 재 지							
⑭ 소득유형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양도내역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⑮ 양도 일자	⑯ 양도 수량	⑰ 양도가액	⑱ 취득가액	⑲ 양도차익 (⑰-⑱)	⑳ [⑰]양도가액 × 10%	㉑ [⑲]양도차익 × 20%	㉒ 자진납부세액 [⑳과 ㉑ 중 적은 금액]	㉓ 납부할 세액 (㉒×10%)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신고안내 : 양도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0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법인명 ~ ②법인세 세액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7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③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 ②법인세 자진납부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4서식] <신설 2014.8.8>

외국법인 증여소득 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1. 증여 받은 외국법인(신고인) 인적사항

① 납세관리번호	② 거주지국 코드 :
③ 법인명	④ 대표자 성명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2. 증여한 자 인적사항

⑧ 납세관리번호	⑨ 거주지국 코드 :
⑩ 상호	⑪ 성명
⑫ 소재(주소)지	

3. 증여받은 자산

⑬ 증여일	⑭ 종류	⑮ 소재지	⑯ 수량(면적)	⑰ 증여가액	⑱ 채무액
합계					

4. 납부할 세액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⑲ 소득금액 (⑰-⑱)	⑳ 세율	㉑ 산출세액 (⑰×⑳)	㉒ 가산세	㉓ 납부할 세액 (㉑+㉒)	㉔ 납부할 세액 (㉓×10%)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라 증여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계산한 내역 2. 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신고안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①납세관리번호 ~ ㉓납부할세액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㉔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 ㉓법인세 납부할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5서식] <신설 2014.8.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용역제공자	① 납세관리번호	② 거주지국
	③ 법 인 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인적용역제공기간 ~ . . .
	⑦ 소 재 지	
용역을 제공받는자	⑧ 상호 (성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 재 지	

수입 · 비용 내역		법인지방소득세					
⑪ 수입금액	⑫ 관련비용	⑬ 과세표준	⑭ 산출세액	⑮ 가산세	⑯ 총부담세액 (⑭+⑮)	⑰ 기납부세액	⑱ 차감 납부세액 (⑯-⑰)

⑲ 관련비용 명세(⑫의 상세내용)				
항목구분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합 계
금 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1제6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역제공계약서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신고안내 : 용역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1. ①납세관리번호 ~ ⑬과세표준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2. ⑭산출세액란 : ⑬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3. ⑲관련비용 명세란 : ⑫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6서식] <신설 2014.8.8>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① 법 인 명(조 합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⑥ 전화번호

구 분	금 액
⑦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	
⑧ 자 기 자 본 총 액	
⑨ 과 세 표 준(⑦-⑧)	
⑩ 세 율	
⑪ 산 출 세 액	
⑫ 가 산 세 액	
⑬ 공 제 세 액	
⑭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3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수수료 없 음
------	-------------------	------------

신 고 인 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법인세와 동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5항에 따른 3년 균분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본 책자는 2014년 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의 오류나 개선의견을 (02)2133-3395, 3398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발행일자 : 2014년 12월

발 행 처 : 서울특별시 재 무 국

집필·편집 : 재 무 국 장 김 영 한

세 무 과 장 김 근 수

세무관리팀장 류 대 창

세 무 과 이 주 열

세 무 과 전 인 열

〈비 매 품〉